



제439회국회(정기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자동차 책임보험에서 약국의 약제비 직접 청구〉

■ 박성훈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8145호)

2026. 9.

국 토 교 통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오 세 일

목 차

□ 박성훈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8145호)	1
Ⅰ. 제안경위	1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Ⅲ. 검토의견	2
1. 자동차 책임보험에서 약국의 약제비 직접 청구	2

□ 박성훈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8145호)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박성훈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6. 4. 07.
3. 회 부 일 : 2026. 4. 08.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험회사가 교통사고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에 자동차 보험진료수가의 지급 의사 유무와 지급 한도를 알리고 이를 통지받은 의료기관이 보험회사에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의료기관에서 받은 처방전에 따라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하는데 발생한 비용(이하 “약제비”라 한다)의 청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교통사고환자는 약제비를 약국에 우선 지급한 후에 영수증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보험회사에 약제비를 청구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음.

이에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용어를 자동차보험수가로 변경하고, 약제비를 자동차보험수가에 포함하여 약국도 약제비를 보험회사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통사고환자의 약제비 관련 보험금 청구에 대한 불편함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7호 등).

Ⅲ. 검토의견

1. 자동차 책임보험에서 약국의 약제비 직접 청구(안 제2조제7호 등)

개정안은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용어를 자동차보험수가로 변경하고, 약제비를 자동차보험수가에 포함하여 약국도 약제비를 보험회사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 6. (생략)	1. ~ 6. (현행과 같음)
7. “ <u>자동차보험진료수가(診療酬價)</u> ”란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고를 당한 자(이하 “교통사고환자”라 한다)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에서 <u>진료를 받음으로써 발생하는 비용</u> 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적용되는 금액을 말한다.	7. -- <u>자동차보험수가(酬價)</u> ----- ----- ----- ----- <u>진료</u> <u>를 받거나 의료기관에서 받은 처방전에 따라 「약사법」에 따른 약국(이하 “약국”이라 한다)에서 교통사고환자가 의약품을 조제받음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이하 “진료비등”이라 한다)</u> ----- ----- -----.
가. ~ 다. (생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8.·9. (생략)	8.·9.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안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교통사고 환자를 진료하는 <u>의료기관에</u> 해당 진료에 따른 <u>자동차보험진료수</u>의 지급 의사 유무와 지급 한도를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험회사등으로부터 <u>자동차보험진료수</u>의 지급 의사와 지급 한도를 통지받은 <u>의료기관</u>은 그 보험회사등에게 제15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따라 <u>자동차보험진료수</u>를 청구할 수 있다. ③ <u>의료기관</u>이 제2항에 따라 보험회사등에게 <u>자동차보험진료수</u>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의료법」 제22조에 따른 진료기록부의 진료기록에 따라 청구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u>의료기관</u>이 <u>자동차보험진료수</u>를 청구하면 보험회사등은 30일 이내에 그 청구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보험회사등이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위탁한 경우 전문심사기관이 심사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심사결과에 따라 <u>자동차보험진료수</u>를 지급하여야 한다. ⑤ <u>의료기관</u>은 제2항에 따라 보험회	----- -----<u>의료기관과 그 교통사고 환자에게</u> 의약품을 조제하여 판매한 약국에 해당 진료 및 의약품 조제에 따른 <u>자동차보험수</u>의----- -----. ② ----- --<u>자동차보험수</u>----- -----<u>의료기관 및 약국(이하 “의료기관등”이라 한다)</u>----- ----- ----- -<u>자동차보험수</u>-----. ③ <u>의료기관등</u>----- -----<u>자동차보험수</u>----- -----<u>제22조에 따른 진료기록부의 진료기록과 「약사법」 제30조에 따른 조제기록부의 조제기록</u>-----. ④ -----<u>의료기관등이 자동차보험수</u>----- ----- -----. ----- ----- -----<u>자동차보험수</u>-----. ⑤ <u>의료기관등</u>-----

현행	개정안
사등에게 <u>자동차보험진료수가</u>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교통사고환자(환자의 보호자를 포함한다)에게 이에 해당하는 <u>진료비</u>를 청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u>진료비</u>를 청구할 수 있다. 1. 2. (생략) 3. 제1항에 따라 보험회사등이 알린 지급 한도를 초과한 <u>진료비</u>의 경우 4. 제10조제1항 또는 제11조제1항에 따라 피해자가 보험회사등에게 <u>자동차보험진료수가</u>를 자기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청구한 경우 5. (생략) 제12조의2(업무의 위탁) ① 보험회사등은 제12조제4항에 따라 <u>의료기관</u>이 청구하는 <u>자동차보험진료수가</u>의 심사·조정 업무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심사기관(이하 “전문심사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전문심사기관은 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이 청구한 <u>자동차보험진료수가</u>가 제15조에 따른 <u>자동차보험진료수</u>에 관한 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한다. ③·④ (생략)	~~-----<u>자동차보험수가</u>-----~~ ~~-----~~ ~~-----~~ ~~-----<u>진료비</u>등을-----~~ ~~-----~~. ~~-----~~ <u>진료비</u>등을-----. 1. 2. (현행과 같음) 3. ----- ~~-----<u>진료비</u>등-----~~ ~~---~~ 4. ----- ~~-----<u>자</u>~~ ~~-----<u>동차보험수가</u>-----~~ ~~-----~~ 5. (현행과 같음) 제12조의2(업무의 위탁) ① ----- ~~-----<u>의료기관</u>등-----~~ ~~-----<u>자동차보험수가</u>-----~~ ~~-----~~ ~~-----~~ ~~-----~~. ② ----- ~~-----<u>자동차보험수가</u>-----~~ ~~-----<u>자동차보험수가</u>-----~~ ~~-----~~. ③·④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제12조의3(전문심사기관의 조정 및 정산 등) ① 전문심사기관은 전문심사기관의 심사결과에 따라 <u>자동차보험진료수가</u>가 지급된 이후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9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급된 <u>자동차보험진료수</u>를 확인·조정하여 보험회사등과 <u>의료기관</u>에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험회사등과 <u>의료기관</u>은 전문심사기관의 조정결과에 따라 <u>자동차보험진료수</u>를 상호 정산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u>자동차보험진료수</u>를 지급받은 경우 2. 착오 등으로 <u>자동차보험진료수</u>가 잘못 지급된 경우 3. 그 밖에 <u>자동차보험진료수</u>가 잘못 지급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전문심사기관이 제1항에 따라 <u>자동차보험진료수</u>를 확인·조정할 수 있는 기간은 제12조제2항에 따라 <u>의료기관</u>이 보험회사등에 해당 <u>자동차보험진료수</u>를 청구한 날부터 5년 이내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u>자동차보험진료수</u>의 확인·조정, 상호 정산 등의 방법 및 절차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의3(전문심사기관의 조정 및 정산 등) ① -----<u>자동차보험수가</u>----- -----<u>자동차보험수가</u>----- -----<u>자동차보험수가</u>----- -----<u>자동차보험수가</u>----- -----<u>의료기관등</u>----- -----<u>의료기관등</u>----- -----<u>자동차보험수가</u>----- -----. 1. -----<u>자동차보험수가</u>----- 2. -----<u>자동차보험수가</u>----- 3. -----<u>자동차보험수가</u>----- ----- ② -----<u>자동차보험수가</u>----- -----<u>의료기관등</u>-----<u>자동차보험수가</u>----- -----. ③ -----<u>자동차보험수가</u>----- ----- -----.

현행	개정안
에게 그 사유와 일자를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14조(진료기록의 열람 등) ① 보험회사등은 <u>의료기관</u>으로부터 제12조제2항에 따라 <u>자동차보험진료수가</u>를 청구받으면 그 <u>의료기관</u>에 대하여 관계 <u>진료기록</u>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2조의2에 따라 심사 등을 위탁받은 전문심사기관은 심사 등에 필요한 <u>진료기록·주민등록·출입국관리</u> 등의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이하 “진료기록등”이라 한다)의 제공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 보험회사등, 보험요율산출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그 밖의 공공단체 등에 요청할 수 있다. ③ ~ ⑧ (생략) ⑨ 전문심사기관은 <u>의료기관</u>, 보험회사등 및 보험요율산출기관에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자료 제공 요청 근거 및 사유, 자료 제공 대상자, 대상기간, 자료 제공 기한, 제공 자료 등이 기재된 자료제공요청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⑩ 제2항에 따른 국가, 지방자치단	-----. ② (현행과 같음) 제14조(진료기록 및 조제기록의 열람 등) ① -----<u>의료기관등</u>----- -----<u>자동차보험수가</u>-----<u>의료기관등</u> -----<u>진료기록 또는 조제기록</u>-----. ② ----- ----- -----<u>진료기록·조제기록·</u>----- ----- ----- ----- ----- ----- ----- -----. ③ ~ ⑧ (현행과 같음) ⑨ -----<u>의료기관등</u>----- ----- ----- ----- ----- ----- -----. ⑩ -----

현행	개정안
체, <u>의료기관</u>, 보험요율산출기관, 공공기관 및 그 밖의 공공단체가 전문심사기관에 제공하는 자료에 대하여는 사용료와 수수료를 면제한다. 제3장 <u>자동차보험진료수가</u> 기준 및 분쟁 조정 제15조(<u>자동차보험진료수가</u>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사고환자에 대한 적절한 진료를 보장하고 보험회사등, <u>의료기관</u> 및 교통사고환자 간의 <u>진료비</u>에 관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u>자동차보험진료수가</u>에 관한 기준(이하 “<u>자동차보험진료수가</u>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 <u>자동차보험진료수가</u>기준에는 <u>자동차보험진료수가</u>의 인정범위·청구절차 및 지급절차,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u>자동차보험진료수가</u>기준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제17조에 따른 <u>자동차보험진료수가</u>분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17조(<u>자동차보험진료수가</u>분쟁심의회) ① <u>보험회사</u>등과 <u>의료기관</u>은 서로 협의하여 <u>자동차보험진료수가</u>와 관련된 분쟁의 예방 및 신속한 해결을	---<u>의료기관</u>등----- ----- ----- ----- 제3장 <u>자동차보험수가</u> 기준 및 분쟁 조정 제15조(<u>자동차보험수가</u> 등) ① ----- ----- ----- <u>의료기관</u>등----- <u>진료비</u>등----- -----<u>자동차보험수가</u>에----- ----- ----- ② <u>자동차보험수가</u>기준에는 <u>자동차보험수가</u>의----- ----- ----- ③ -----<u>자동차보험수가</u>기준----- -----<u>자동차보험수가</u>분쟁심의회----- 제17조(<u>자동차보험수가</u>분쟁심의회) ① <u>보험회사</u>등 및 <u>의료기관</u>등은----- -----<u>자동차보험수가</u>----- -----

현행	개정안
위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u>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u>(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1. <u>자동차보험진료수가</u>에 관한 분쟁의 심사·조정 2. <u>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u>의 제정·변경 등에 관한 심의 3. (생략) ②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u>18명</u>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되, 6명은 보험회사등의 단체가 추천한 자 중에서, <u>6명은 의료사업자단체가 추천한 자</u> 중에서, 6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각각 위촉한다. 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한 위원은 보험회사등 및 <u>의료기관</u>의 자문위원 등 심의회 업무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직을 겸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 ⑥ (생략) 제18조(운영비용) 심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운영비용은 보험회사등과 <u>의료기관</u>이 부담한다. 제19조(<u>자동차보험진료수가</u>의 심사 청구	----- ---<u>자동차보험수가분쟁심의회</u>----- ----- ---. 1. <u>자동차보험수가</u>----- ----- 2. <u>자동차보험수가기준</u>----- ----- 3. (현행과 같음) ② -----<u>24명</u>----- -----. ③ ----- ----- -----<u>6명은 의료사업자단체가 추천한 자</u> 중에서, 6명은 「약사법」 제11조에 따른 약사단체가 추천한 자 중에서----- ----- -----. ----- ----- ---<u>의료기관등</u>----- ----- -----.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18조(운영비용) ----- ----- ---<u>의료기관등</u>-----. 제19조(<u>자동차보험수가</u>의 심사 청구

현행	개정안
구 등) ① <u>보험회사등과 의료기관</u>은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심사결과 또는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조정결과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이의제기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의회에 그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생략) ③ 전문심사기관의 심사결과 또는 조정결과를 통지받은 <u>보험회사등 및 의료기관</u>은 제1항의 기간에 심사를 청구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나는 날에 <u>의료기관</u>이 지급 청구한 내용, 심사결과 또는 조정결과에 합의한 것으로 본다. ④ ~ ⑥ (생략) 제20조(심사·결정 절차 등) ① 심의회는 제19조제1항에 따른 심사청구가 있으면 <u>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u>에 따라 이를 심사·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그 심사 청구 사건이 <u>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u>에 따라 심사·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② (생략) 제22조(심의회의 권한) 심의회는 제20조제1항에 따른 심사·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u>보험회사등·의료기관·보험사업자단체</u> 또는	등) ① <u>보험회사등 및 의료기관등</u>----- ----- ----- ----- ----- ----- -. ② (현행과 같음) ③ ----- -----<u>보험회사등 및 의료기관등</u>----- ----- -----<u>의료기관등</u>이----- ----- -----.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20조(심사·결정 절차 등) ① ----- ----- -----<u>자동차보험수가기준</u>----- ----- -----<u>자동차보험수가 기준</u>----- ----- -----. ② (현행과 같음) 제22조(심의회의 권한) ----- ----- -----<u>의</u> <u>료기관등</u>-----

현행	개정안
의료사업자단체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 또는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전문가에게 진단 또는 검안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제43조(검사·질문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속 공무원에게 재환시설, <u>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하는 의료기관</u> 또는 제45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권한을 위탁받은 자의 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u>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한 의료기관</u>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3호의 행위에 한정한다. 1. ~ 3. (생략) ② ~ ④ (생략) 제46조(벌칙) ① ~ ③ (생략) ④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진료기록부의 진료기록과 다르게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하거나 이를 청구할 목적으로 거짓의 진료기록을 작성한 <u>의료기관</u>에 대하여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 -----. 제43조(검사·질문 등) ① ----- ----- -----<u>자동차보험수가</u> -----<u>의료기관등</u>----- ----- ----- ----- -----<u>자동차보험수가</u> <u>가</u>-----<u>의료기관등</u>----- -----. 1. ~ 3.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46조(벌칙)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진료기록부의 진료기록과 다르게 자동차보험수가를 청구하거나 이를 청구할 목적으로 거짓의 진료기록을 작성한 <u>의료기관</u> 2.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조제기록부의 조제기록과 다르게 자동차보

현행	개정안
제48조(과태료)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생략) 2. 제12조제5항을 위반하여 <u>자동차보험진료수</u>를 교통사고환자(환자의 보호자를 포함한다)에게 청구한 <u>의료기관의 개설자</u> 3. ~ 7. (생략) ③ ~ ⑤ (생략)	<u>협수가를 청구하거나 이를 청구할 목적으로 거짓의 조제기록을 작성한 약국</u> 제48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 ----- -----. 1. (현행과 같음) 2. -----<u>자동차보험수가</u>----- -----<u>의료기관등</u>----- 3. ~ 7. (현행과 같음) ③ ~ ⑤ (현행과 같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자동차사고부터 적용한다. 제3조(심의회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는 제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라 자동차보험수가분쟁심의회가 새로 구성되기 전까지는 제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현행	개정안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자동차보험수가분쟁심의회로 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의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항제9호 중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자동차보험수가”로 한다.

가. 검토의견

현행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제7호1)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²⁾를 교통사고환자가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음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보험회사의 보험금으로 해당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및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의 보상금으로 해당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등에 적용되는 금액으로 정의하고 있음.

현행 제12조³⁾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지급 절차에 대해 규정하고 있

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자동차보험진료수가(診療酬價)”란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고를 당한 자(이하 “교통사고환자”라 한다)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에서 진료를 받음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적용되는 금액을 말한다.

가. 보험회사(공제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보험회사등”이라 한다)의 보험금(공제금을 포함한다. 이하 “보험금등”이라 한다)으로 해당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나. 제30조에 따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의 보상금으로 해당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다. 교통사고환자에 대한 배상(제30조에 따른 보상을 포함한다)이 종결된 후 해당 교통사고로 발생한 치료비를 교통사고환자가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경우

2) 자동차보험진료수가는 교통사고 환자의 적절한 진료를 보장하고 의료기관 및 보험사 간의 진료비에 관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1995년부터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 기준을 정하여 고시 중임.

3)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2조(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청구 및 지급) ① 보험회사등은 보험가입자등 또는 제10조제1항 후단에 따른 피해자가 청구하거나 그 밖의 원인으로 교통사고환자가 발생한 것을 안 경우에는

는데, 보험회사등(공제사업자 포함)이 교통사고환자 발생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의료기관에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지급 의사와 한도를 알려도록 하고, 의료기관은 진료기록부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고시 기준으로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하며, 보험회사등은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액을 지급하도록 하되, 의료기관은 원칙적으로 교통사고환자에게 해당 진료비를 청구할 수 없음.

지체 없이 그 교통사고환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에 해당 진료에 따른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지급 의사 유무와 지급 한도를 알려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보험회사등으로부터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지급 의사와 지급 한도를 통지받은 의료기관은 그 보험회사등에게 제15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따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할 수 있다.
- ③ 의료기관이 제2항에 따라 보험회사등에게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의료법」 제22조에 따른 진료기록부의 진료기록에 따라 청구하여야 한다.
- ④ 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이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하면 보험회사등은 30일 이내에 그 청구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보험회사등이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위탁한 경우 전문심사기관이 심사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심사결과에 따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 ⑤ 의료기관은 제2항에 따라 보험회사등에게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교통사고환자(환자의 보호자를 포함한다)에게 이에 해당하는 진료비를 청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진료비를 청구할 수 있다.
 - 1. 보험회사등이 지급 의사가 없다는 사실을 알리거나 지급 의사를 철회한 경우
 - 2. 보험회사등이 보상하여야 할 대상이 아닌 비용의 경우
 - 3. 제1항에 따라 보험회사등이 알린 지급 한도를 초과한 진료비의 경우
 - 4. 제10조제1항 또는 제11조제1항에 따라 피해자가 보험회사등에게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자기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청구한 경우
 - 5.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청구 및 지급 절차 >



한편,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인정 범위에는 약제비⁴⁾도 포함되는데, 현행 제15조제1항⁵⁾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동차보험진료수가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있고, 제2항은 그 기준에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인정범위·청구절차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위임 받은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제5조제1항⁶⁾은 교통사고환자에 대한 진료기준과 진료에 따른 비용의 인정범위를 건강보험기준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건강보험 요양급여 항목에 약제비가 포함⁷⁾

4) 의료기관에서 받은 처방전에 따라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하는데 발생한 비용을 말함.

5)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5조(자동차보험진료수가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사고환자에 대한 적절한 진료를 보장하고 보험회사등, 의료기관 및 교통사고환자 간의 진료비에 관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이하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에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인정범위·청구절차 및 지급절차,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6)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제5조(진료수가의 인정범위) ① 교통사고환자에 대한 진료수가의 인정범위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이 그 권한을 위임하거나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정한 내역 및 기준

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7에 따른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기준'

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른 응급의료수가기준

7)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요양급여) ①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요양급여

되어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인정범위에 약제비가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청구 주체를 의료기관으로 한정하고 있어, 약제비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청구·지급 체계에 포함되지 않음.

이에 약국이 보험회사등에 직접 약제비를 청구할 법적 근거가 없어, 교통사고환자는 약제비를 약국에 먼저 지급한 후 보험회사등에 별도로 청구하는 절차를 거쳐야 함.

< 의료기관 및 약국의 청구와 지급 절차 비교 >



※ 보험회사등은 의료기관이 청구하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심사·조정 업무 등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하고 있음(「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2조의2).

를 실시한다.

1. 진찰·검사
2. 약제(藥劑)·치료재료의 지급

개정안은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명칭을 자동차보험수가로 변경하고, 그 인정범위에 약제비를 포함하여 약국이 보험회사등에 직접 자동차보험진료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며, 이와 관련한 자동차보험진료수가 분쟁심의회⁸⁾ 구성 근거를 정비하려는 것임.

현행법상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⁹⁾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이하 “자동차 책임보험”이라 함)에 가입하여야 함¹⁰⁾.

8)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7조(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 ① 보험회사등과 의료기관은 서로 협의하여 자동차보험진료수가와 관련된 분쟁의 예방 및 신속한 해결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1.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분쟁의 심사·조정
2.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의 제정·변경 등에 관한 심의
3. 제1호 및 제2호의 업무와 관련된 조사·연구

②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8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되, 6명은 보험회사등의 단체가 추천한 자 중에서, 6명은 의료사업자단체가 추천한 자 중에서, 6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각각 위촉한다. 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한 위원은 보험회사등 및 의료기관의 자문위원 등 심의회 업무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직을 겸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⑥ 심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 사망한 경우에는 1억 5천만원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지급하고, 부상의 경우에는 상해 구분별 한도금액에 차이가 있는데 가장 높은 상해 1급은 3천만원 이내임.

10)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보험 등의 가입 의무) ①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이하 “책임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자동차보유자는 책임보험등에 가입하는 것 외에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 피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이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건설기계관리법」 및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따른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책임보험등에 가입하는 것 외에 자동차 운행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책임보험등의 배상책임한도를 초

이 자동차 책임보험은 민영보험회사가 운영하는 사보험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강제가입 의무와 피해자 보호라는 사회보장적 측면에서 건강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함)과 같은 사회보험과 유사한 특성을 가지며, 임의가입을 전제로 하는 실손의료보험과는 구별됨.

< 보험 가입 방식 등 비교 >

구분	건강보험	산재보험	자동차 책임보험	실손의료보험
보험 종류	사회보험	사회보험	사보험	사보험
가입 방식	강제가입	강제가입	강제가입	임의가입
운영 주체	국민건강보험공단 (공공기관)	근로복지공단 (공공기관)	민영보험회사 (영리법인)	민영보험회사 (영리법인)
주요 목적	국민 의료보장 (사회보장)	업무상 재해 보상 (사회보장)	피해자 보호 (사회보장적 성격)	개인의 경제적 이익 보호

위 보험들의 진료비·약제비 청구 절차를 살펴보면, 진료비의 경우 자동차 책임보험은 건강보험·산재보험과 유사하게 의료기관이 각 보험자에 진료비를 직접 청구하지만, 실손의료보험은 환자 선결제 후 보험회

과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이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건설기계관리법」 및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따른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6.>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 대여사업자
 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및 제29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
 4.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건설기계 대여업자
 5.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나목에 따른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 ④ 제1항 및 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와 도로(「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아닌 장소에서만 운행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⑤ 제1항의 책임보험등과 제2항 및 제3항의 보험 또는 공제에는 각 자동차별로 가입하여야 한다.

사에 청구하는 구조임. 반면, 약제비의 경우 자동차 책임보험은 실손의료보험과 유사하게 환자 선결제 후 보험회사에 청구하지만 건강보험·산재보험은 약국이 공단에 직접 청구하는 구조임.

< 진료비·약제비 청구 방식 비교 >

구분	건강보험	산재보험	자동차 책임보험	실손의료보험
진료비 청구	의료기관 → 건강보험공단(직접 청구)	의료기관 → 근로복지공단(직접 청구)	의료기관 → 보험회사(직접 청구)	환자 선결제 후 보험회사 청구
약제비 청구	약국 → 건강보험공단(직접 청구)	약국 → 근로복지공단(직접 청구) ¹¹⁾	환자 선결제 후 보험회사 청구	환자 선결제 후 보험회사 청구
심사 기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위탁)	보험회사 자체 심사

이처럼 자동차 책임보험은 강제가입과 피해자 보호라는 측면에서 사회보험적 특성을, 운영 형식에서는 사보험적 특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진료비 청구체계는 건강보험·산재보험과 같은 사회보험 구조인 반면 약제비 청구체계는 실손의료보험과 유사한 사보험 구조를 가지고 있음.

개정안은 다음 측면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 수 있음.

1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6조(약제비의 청구 등) ① 공단은 제40조제4항제2호에 따른 약제의 지급을 「약사법」 제20조에 따라 등록한 약국을 통하여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약국이 약제비를 받으려면 공단에 청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청구된 약제비에 관한 심사 및 결정, 지급 방법 및 지급 절차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첫째, 교통사고환자의 편익을 제고할 수 있음.

현행 약제비 청구체계에서는 교통사고환자가 약제비를 선지급한 후 별도의 환급 청구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교통사고환자에게 일시적인 경제적 부담이 발생하고 행정적 불편이 수반됨. 특히 거동이 불편하거나 서류 처리에 취약한 고령·중상해 환자의 경우 이러한 부담이 더욱 가중될 수 있음.

약국의 약제비 직접 청구 방식을 도입할 경우, 교통사고환자가 약제비를 선지급하고 환급을 청구하는 이중적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므로 교통사고환자의 편익이 제고되고, 고령·중상해 환자의 행정적 부담도 경감될 수 있음.

둘째, 교통사고환자를 보호하고 제도의 일관성을 제고할 수 있음.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교통사고환자의 경우 약제비 선지급 부담이 적기 치료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약국이 보험회사등에 약제비를 직접 청구하는 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교통사고환자 보호를 실질적으로 강화할 수 있음.

또한 현행법은 동일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임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진료비와 약국에서 발생하는 약제비에 대하여 이원화된 청구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약제비 청구절차를 진

료비 청구절차와 동일한 방식으로 변경함으로써 제도의 일관성을 제고할 수 있음.

셋째, 약제비 청구 누락을 방지하고 보험 혜택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음.

현행 구조에서는 교통사고환자가 약제비 청구 절차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불편함으로 인해 청구를 포기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함. 약국이 보험회사등에 직접 청구하는 구조로 전환될 경우, 교통사고환자의 인지 부족이나 포기로 인한 청구 누락 문제가 해소되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음.

반면, 다음 측면에 대해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제도 운영구조 변경에 따라 행정비용이 발생하는 반면 변경의 실익이 낮은 문제가 있음.

현행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청구·심사·지급 체계는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구축되어 있으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 체계 및 전산 시스템 등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설계되어 있음.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2만 5천개가 넘는 약국이 새롭게 청구 주체로 편입되어야 하므로, 이에 따른 시스템 구축, 약국 관리 프로그램 개편, 심사 인력 확충 비용 등 상당한 행정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반면, 총진료비에서 약제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건강보험 23.7%에 비해 자동차보험은 1.66%에 그쳐 제도운영구조 변경에 따른 실익이 낮은 것으로 보임.

< 총진료비에서 약제비가 차지하는 비중 >

(단위: 억원, %)

구분	총진료비	약제비	
건강보험	1,187,809	281,485	23.70%
자동차보험	27,621	458	1.66%

자료: 국토교통부

둘째, 약국 현장에서의 대기 문제 및 다른 환자에 대한 불편이 발생할 수 있음.

약국이 보험회사등에 직접 약제비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진료비 청구와 같이 조제 전·후 보험회사등으로부터 지불보증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함. 이 과정에서 지불보증 확인¹²⁾에 시간이 소요될 경우, 자동차보험 환자는 해당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약국에서 대기하여야 함.

이는 자동차보험 환자 본인의 불편에 그치지 않고, 동시에 약국을 이용하는 건강보험 환자 등 다른 이용자 서비스 제공에도 지연을 초래할 수 있어, 약국 이용자의 서비스 불편으로 이어질 수 있음.

12) “지불보증 확인 대기” 문제는 건강보험·산재보험처럼 표준화된 공적 급여기준을 가진 단일 보험자 체계에는 없고, 다수의 민영 보험회사가 사고별로 개별 심사·보증을 하는 자동차보험 구조의 문제임.

셋째, 약국의 업무 부담이 증가하고 서비스 질이 저하될 우려가 있음.

약국이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청구 주체로 편입될 경우, 청구서 작성,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 대응, 이의제기 절차 등 상당한 행정 업무가 추가될 수 있어, 약국 서비스의 질이 저하될 수 있음.

따라서 교통사고환자의 편익 제고, 교통사고환자 보호 강화 및 제도의 일관성 제고 등과 제도 변경에 따른 행정비용의 발생, 약국 현장에서의 대기 문제 및 서비스 질 저하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한편, 현행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는 보험회사등의 단체 추천 6명, 의료사업자단체 추천 6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공익위원 6명으로 구성되어 보험계·의료계·공익대표의 3자 균형 구조임.

개정안에 따라 약국이 청구 주체로 편입될 경우, 약사단체 추천 위원을 별도로 6명 추가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으나, 이는 위원 수 증가에 따른 운영 효율성 저하, 이해관계 당사자 간 균형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현행 18명의 위원 수와 3자 균형 구조를 유지하되, 기존 ‘의료사업자단체 추천 6명’을 ‘의료사업자단체 및 약사단체가 추천하는 자 중 6명’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또한, 개정안 부칙 제2조 적용례는 개정규정을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자동차사고”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 법률 시행 전에 발생한 사고로 시행일 이후에도 계속 의약품을 조제받는 환자가 개정규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적용기준을 “이 법 시행 이후 의약품을 조제받는 경우”로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나. 관계 기관 및 단체 의견

1) 국토교통부

개정안과 같이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약제비를 포함하는 경우, 약국도 진료수가 청구·심사·심사분쟁 체계에 새롭게 포함되어 제도 운영구조 변경과 전산·심사체계 구축이 필요한 점을 고려할 때,

제도개선으로 교통사고 환자가 얻게 되는 편익과 관리시스템 개편, 약국 및 보험사의 관리비용 증가 등으로 추가되는 행정비용, 약제비 청구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검토가 선행될 필요가 있음.

또한 약제비 분쟁 규모를 고려한 약사단체 추천 위원 증원 필요성, 운영비용 분담 기준 및 기존 위원 구성과의 균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2) 대한약사회

지불보증 확인에 소요되는 시간 동안 자동차보험 환자는 복약지도를

현장에서 대기하여야 하며, 이는 건강보험 환자에게도 불편함이 예상됨. 또한, 행정업무 추가에 따른 약료 서비스의 질 저하가 우려되며, 약국 관리프로그램 개편에 따른 비용 부담 등의 문제도 선행될 필요가 있음.

교통사고 환자가 약제비를 선지급한 후 별도로 환급을 받아야 하는 현행 구조는 환자의 불편과 부담을 초래하며, 국민 편의 증진과 절차 간소화 측면에서 개정이 필요함.

3) 대한한약사회

교통사고 환자가 약제비를 선지급한 후 별도로 환급을 받아야 하는 현행 구조는 환자의 불편과 부담을 초래하며, 국민 편의 증진과 절차 간소화 측면에서 개정이 필요함.

4) 손해보험협회

소액인 약제비까지 보험사의 지급보증을 강제하는 것은 치료비 부담으로부터 적기 치료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 도입 취지를 벗어나고, 과잉조제나 인과관계 없는 약제비 청구 등의 도덕적 해이 발생 가능성이 우려되며, 수만 개 개별 약국에 대한 심사 및 지급절차 마련 등에 따른 행정비용 낭비를 초래할 우려가 있음.

5) 대한의사협회

약국의 자동차보험 약제비 직접청구 도입은 사후 비용심사 기준이 의사의 처방 판단에 영향을 미쳐 진료 자율성을 침해할 소지가 있고, 청구 주체(약국)와 처방 주체(의료기관)가 분리되어 약제비 삭감 등 비용 분쟁 시 책임 소재가 불명확해질 우려가 있음.

또한 자동차보험수가분쟁심의회 위원 확대 및 약사단체 위원 포함은 의학적 판단이 중요한 진료비 분쟁 심의에서 위원 구성의 균형·전문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재검토가 필요하다.

문 의 처
02)6788-5575